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속기록

회의명 : 제15차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회의

회의일시 : 2026. 6. 5.(금) 10:00

장소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4층 회의실

참석위원 : 김종철 위 원 장
고민수 위 원
류신환 위 원
최수영 위 원
이상근 위 원
윤성욱 위 원 (6명)

불참위원 : 없 음

제15차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회의 속기록

【10시 00분 개회】

1. 성원보고

- 김종철 위원장
 - 성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우혁 의안·정책관리팀장
 - 위원 6인이 참석하셔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2. 국기에 대한 경례

- 이우혁 의안·정책관리팀장
 -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서 전면의 국기를 향해 주십시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3. 개회선언

- 김종철 위원장
 - 2026년도 제15차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반갑습니다. 활기가 넘치는 6월의 첫 금요일입니다. 날씨는 오락가락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방송사업자가 방송·미디어의 공공성과 공적 책임을 다하고 있는지 점검하기 위한 안건을 논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지상파방송사업자 소유제한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입니다. 방송법상 소유제한 규정은 미디어 다양성과 공공성을 지키기 위한 규범인 만큼, 위반 사업자에 대해 적정 처분이 내려질 수 있도록 심도 있는 논의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위성 방송사업자 재허가 건입니다. 미디어 플랫폼 간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위성방송의 공적 책임과 서비스 경쟁력이 균형 있게 유지될 수 있도록 안건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024년 종합편성·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재승인 조건 등에 대한 이행실적 점검 결과입니다. 방송사업자가 시청자를 대상으로 한 공적 약속들을 충실히 지키고 있는지 면밀하게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해안을 기대하며, 지금부터

제15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4. 전차 회의록 확인

○ 김종철 위원장

- 먼저 2026년도 제14차 회의의 회의록, 속기록을 확인하고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속기록, 회의록에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동의하신 대로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5. 회의공개 여부 결정

○ 김종철 위원장

- 오늘 회의에는 <의결안건> 2건, <보고안건> 1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이 안건을 공개로 심의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오늘 회의는 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6. 의결사항

가. 경남기업(주)의 지상파방송사업자(DMB) 소유제한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한 건 (2026-15-438)

○ 김종철 위원장

- <의결사항 가> “경남기업(주)의 지상파방송사업자(DMB) 소유제한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한 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동석 지역미디어정책과장

- 보고드리겠습니다. <1> 의결주문은 ‘「방송법」 제8조 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위반한 경남기업 주식회사를 관계기관에 고발한다’입니다. <2> 제안이유는 「방송법」 제8조 제3항을 위반한 경남기업 주식회사에 대한 행정처분(안)을 심의·의결하기 위함입니다. <3> 경과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3쪽 <4> 주요내용입니다. <가> 피심인 일반 현황입니다. 경남기업(주)은 SM기업집단 소속 회사로서 주택건설 등 건설업을 주요사업으로 하고 있으며, 지상파방송사업자인 (주)와이티엔디엠비의 주식 17.26%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경남기업 현황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관련 규정입니다. 「방송법」 제8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은 대기업 및 그 계열회사가 지상파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방송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주식을 소유한 자는 같은 조 제12항에 따라 그 초과분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방미통위는 같은 법 제8조 제13항에 따라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위반사항의 시정을 명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방송법」 제106조 제1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다음 4쪽 <다> 위반 사항입니다. 피심인은 방통위가 2025년 3월 19일 의결하여 부과한 지상파방송사업자 소유제한 위반 시정명령을 미이행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현재까지 주식 소유 관계에 변동 없이 (주)와이티엔디엠비 주식 17.26%를 소유하고 있으며, 피심인이 소속된 SM기업집단의 대기업 지정 상태가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라> 피심인 의견입니다. 피심인은 시정명령 처분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매각 공고를 게재하고 주요 주주와 현황 공유를 통해 지분 처분에 노력하였으나 DMB 시장의 구조적 침체로 매수자를 찾는 것은 어려웠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초과 보유 지분에 대한 지배력 차단을 위해 보유 지분 의결권을 (주)와이티엔디엠비에 전면 위임하고 있으며, 2024년 3월 이후 (주)와이티엔디엠비 임원 선임을 중단하는 등 영향력 행사를 제한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시정명령의 처분 유예 및 제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5> 검토 의견입니다. <가> 검토 사항입니다. 「방송법」 제8조 제13항에 따라 피심인에게 (주)와이티엔디엠비 주식 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소유하지 않도록 하는 등 소유제한 위반상태에 대한 시정명령을 4차례 부과하였으나 이행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방송법」 제106조 제1항에 따라 관계기관에 고발하거나 「방송법」 제8조 제13항에 따라 5차 시정명령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5쪽 <나> 처분(안)입니다. 경남기업(주)을 「방송법」 제106조 제1항에 따라 관계기관에 고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시정 기회를 4차례 부여하였음에도 장기간 「방송법」 위반 상태가 지속되고 있어 위법 상태 해소를 위해 보다 엄격한 법 집행이 필요한 점을 고려하였습니다. <6> 향후 계획입니다. 오늘 안건을 의결해 주시면 관계기관 고발 조치 등 절차를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 김종철 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 이 건은 방송법 제8조 제3항을 위반하여 저희가 오랜 기간에 걸쳐 4차례 승계한 위원회에서 시정명령을 내린 부분을 저희들이 다시 시정명령을 할 것인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미디어 환경이 많이 변화해서 특히 DMB 사업과 관련된 시장 상황이 좋지 못한 상황임을 고려하더라도 이미 수차례 시정명령이 내려진 건에 대해 방송법 위반 상태를 장기간 지속하게 되는 것은 법의 실효성을 고려할 때 저희 행정청이 엄중히 고려해야 할 사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수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최수영 위원

- 피심인 의견을 보니까 처분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매각 공고를 게재하고 지분 처분에 노력하였으나 구조적 침체로 매수자를 찾는 것이 어려웠다고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노력했다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4차례나 시정명령을 했는데도 이것이 이행이 되지 않았다는 것은 시장의 구조적 문제와 직결되어 있다는 의미로 봐도 되겠습니까?

○ 이동석 지역미디어정책과장

- 예, 그렇습니다.

○ 최수영 위원

- 저희가 이번에 원안을 가지고 법에서 5차례 시정명령을 한다 하더라도 시정될 기미가 보이지 않아서 저도 관계기관에 고발하는 것을 찬성하는데 그렇게 됐을 경우 관계기관에서 처리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고발되면 이것이 시정될 소지나 여지는 있습니까?

○ 이동석 지역미디어정책과장

- 검찰청에 고발한 이후 보완 수사 등을 통해 경찰에서 조사한 후 나머지 검찰이 결정을 내릴 텐데 시장의 구조적 상황을 볼 때 이른 시간 내에 이런 상황이 해소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 최수영 위원

- 위원장님,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법의 엄정성이나 규정 등 저희 기관의 권위를 위해서라도 이것은 시정명령을 4차례 부과했기 때문에 저는 관계기관의 적법 절차를 밟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닌가, 저희가 피심인의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그렇게 가는 것이 맞는 방향성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 김종철 위원장

- 의견 감사합니다. 저희가 승계한 기관에서 수차례 시정명령을 했고 그 자체가 시장 상황 등을 이유로 법의 취지에 따라 시정될 가능성이 없는 상황에서 시정명령을 계속 반복하는 것은 행정기관의 책무를 다 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에서 절차를 일정 부분 종료하는 단계 차원에서 고발권을 행사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주신 것으로 이해합니다. 류신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류신환 위원

- 이 건을 검토하면서 고민이 많았고 다른 위원님들과 논의도 많이 했습니다. 특히 이 건이 처음에는 제한 기준을 초과해서 위반 사항이 아니었다가 경남기업(주)이 SM으로 인수가 되면서 대규모기업집단으로 변화가 되면서 그 지분 소유 자체가 대규모기업집단의 지분 소유 제한 기준을 초과하는 바람에 위반상태가 초래되었습니다. 그런 경위를 고려하면 경남기업(주) 입장에서는 스스로 위반을 의도해서 의도적으로 위반 상태를 만든 것은 아니라는 점이 고려가 되어야 할 부분이 있었습니다. 또 이 위반 상태가 지속되면서 이것을 해소하지 못하게 되자 의결권을 (주)와이티엔디엠비에 전면 위임해서 기타비상무이사 선임 등 임원 선임을 중단하면서 영향력 행사를 조금 줄이려고 노력한 점도 고려가 되는 사항으로 고려했습니다. 다만, 위원장님이나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위반 상태가 너무 오래 계속되고 있고 시정명령을 4차례나 한 상태이고, 또 대규모기업집단의 기준이 향후 변동될 가능성도 있는 상황에서 위법 상태를 유지한 상태에서 다시 그러한 기준의 변화에 의해 위반 상태가 다른 제도의 변화 때문에 위반되지 않는 상태로 바뀌게 된다면 이런 위반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어떤 제도 변화를 기다리면서 그대로 유지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이익을 예상하면서

법 위반 상태를 유지하고자 하는 유인을 사업자들이 가지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상태는 저희들이 예정하는 정책 목적에는 맞지 않는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다음 순서로 예정되어 있는 관계기관 고발을 취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 김종철 위원장

- 류신환 위원님 감사합니다. 윤성욱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윤성욱 위원

- 제가 간담회 때 소수 의견이어서, 일단 결론적으로 저는 시정명령 유예 결정 의견을 드립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지금 상황이 경남기업(주)에게는 시정명령을 이행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이행 불능 상태라고 판단됩니다. 경남기업(주)이 의견서 낸 것을 보면 지분 매각을 많이 시도했지만 매수자를 찾지 못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견서에 보면 유사하게 (주)와이티엔디엠비의 주주인 도로교통공단이 있고 이 도로교통공단도 똑같은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공기관으로서 투자가 부적합하다고 해서 2007년부터 2019년까지 12년간 매각을 시도했다고 합니다. 유찰만 49회에 있었고, 그런데 도로교통공단도 지금 실패하고 있고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의견서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도로교통공단도 2007년부터 2019년까지 12년간 매각을 시도했는데 못 했고, 심지어 2023년에 DMB 이용률이 2%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 제조사들이 DMB 기능을 삭제하고 있어서 국민들이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은 100억이 넘게 손실이 나고 있는 것으로 자료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사업자가 이것을 투자하겠습니까? 그래서 도로교통공단과 같은 공공기관도 못 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했을 때 경남기업(주)에게 계속 시정명령을 이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에서 내릴 수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는 이 사업자들에게 책임이 있는가, 귀책성을 볼 필요가 있는데 앞서 류신환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처음부터 대기업이 아니었던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처음 2004년에 DMB 시작할 때 사업자 허가하면서 다들 아시겠지만 '내 손 안의 TV'라고 해서 황금알을 낳는 사업처럼 했고, 정부 정책을 믿고 투자한 사업자들인데 사실은 불행히도 2008년에, 4년 차이지요. 4년 후에 아이폰(iPhone)이 등장하면서 예상하지 못하게 정부 정책만 믿고 투자했다가 손실을 많이 본, 어떻게 보면 DMB 투자했던 기업들은 기술과 시장 환경 변화에 따라 피해자로 보입니다. 오히려 규제기구인 위원회가 이 DMB 서비스를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향후 투자한 기업이나 아니면 사업자들에게 출구정책을 마련해 주어야 할지를 시급히 논의해야 할 상황입니다. 아울러, 10조 원 이상 대기업 지분 참여 제한 기준은 이것도 잘 아시겠지만 2008년에 적용했고, 현재 대한민국 경제규모를 고려할 때 20년 동안 규제 합리화를 이루지 못한 것은 어떻게 보면 정책기관의 잘못도 크다고 보고, 지금 DMB 사업자에게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규제 목적 달성과 관련된 부분인데 대기업 지분을 제한하는 것은 공적 책무를 하는 방송에 과도한 개입을 우려해서 이 규제를 적용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재 의견서를 보면 경남기업(주)은 (주)와이티엔디엠비 경영 독립성 보장을 위해 이미 이사 선임을 중단했고, 의결권 행사도 전면 중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실질적 지배력 차단까지도 약속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현실적으로 이행하기가 어려운 상태라는 점 그리고 사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 이 측면, 또 이 규제를 우리가 적용하는 규제 목적의 달성 측면들을 고려했을 때 그저 우리가 2022년부터 시정명령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이것을 위반했다는 사실만으로 징역 1년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해당하는 관계기관 고발은 저는 과도한 조치라고 봅니다. 사업자도 국민인데 이 미디어 분야에서 가장 전문성 있는 것이 우리 위원회입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회가 이것을 판단해 주지 않으면 이런 DMB 상황들을 어디 가서 호소하겠습니까? 저는 결론적으로 여러 가지 측면이 있긴 하나 경남기업(주)의 지분 매각에 대한 앞으로 어떻게 또 계획을 이행할지 제출하도록 하고, 향후 지속적으로 경영권 개입을 제한하는 등 이런 일정 요건을 부과해서 시정명령을 유보해주는 것이 타당한 조치라고 봅니다.

○ 김종철 위원장

- 윤성욱 위원님께서 시정명령 유예 의견을 개진해 주셨습니다. 이상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이상근 위원

- 윤성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일견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주)와이티엔디엠비 사업 자체가 사양 산업이기 때문에 뭔가 저희가 트리거(trigger)를 제공하지 않으면 계속 적자가 누적될 것입니다. (주)와이티엔디엠비 같은 경우 제가 알기로는 연 100억씩 적자가 나기 때문에 자본 잠식 상태가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기타비상무이사라는 것이 모회사에서 자회사로 파견하는 양식으로 경영권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데, 지금 다 포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계속 저희가 살린다는 것은 쉽게 이야기하면 새로운 방향을 모색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주)와이티엔디엠비가 새로운 뉴미디어에 대한 것으로 방향 전환할 수 있는 뭔가 충격을 주어야 하지 않는가 하는 측면에 있어서도 아까 처분 유예도 좋은 방법이지만 시정명령을 통해 그런 새로운 방향을 한 번 찾아보라는 의미로 시그널을 주는 것도 의미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원안을 지지합니다. 이상입니다.

○ 김종철 위원장

- 감사합니다. 고민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고민수 위원

- 저는 법 구조를 보고 해당 법 조항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자를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정책적 수단을 논의하는 자리라면 다양한 의견이 표출되고 또 토론이 이루어질 수 있지만 이 건은 방송법 제8조에서 분명히 이것을 위반하지 말라고 강제규정으로 규정하고 있고, 또 법 위반 사실에 대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과거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동 조 제8조 제13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미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여부를 판단해서 시정명령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다음에 과거 방통위가 2차, 3차, 4차 시정명령한 것이 위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법 제106조 제1항에 따르면 시정명령을 위반한 자는 반드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행정기관에는 더 이상 판단의 영향력을 입법자가 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통위가 무슨 근거에서 2차, 3차, 4차 시정명령을 할 수 있었는지, 이 시정명령 자체가 방송법 제106조를 위반한 위법한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번에 이 건에 대해서는 우리는 엄정한 법치행정의 실현이라는 차원에서 권한도 없는 재량권을 남용해서는 안 되고, 반드시 제106조에 따른 처분을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제 의견입니다. 아울러서 의결주문의 변경을 요청드립니다. 어떻게 변경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면 '방송법 제8조 제3항을 위반해 동 조 제13항에 따른 시정을 명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남기업(주)에 대해 동법 10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고발한다'라고 명확히 적용 법조를 명시해서 해당 사업자가 이 처분에 대해 방어권을 행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관련 법조를 명기해서 의결주문을 변경해 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김종철 위원장

- 고민수 위원님께서 오늘 의결의 주문 결과에 대해서는 찬성하시면서, 다만 법령의 취지를 더 명확히 밝히는 의결주문 수정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실제적 부분에 관해서는 지금 다수의 위원님들께서 의결주문과 같이 관계기관에 고발하는 안에 대해 찬동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어느 정도 논의를 정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미디어 환경의 변화 상황 속에서 우리 행정기관이 법을 집행함에 있어서 고민해야 할 지점들이 일상적인 통상의 조건에 비해 매우 복잡적으로 작용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 면에서는 그 법이 정한 질서를 입법 취지에 맞게 유지하기 위해 법령을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그 법령이 변화된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상황을 합목적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또 다른 요구가 강하게 제기되어 있습니다. 그런 복잡한 상황 속에서 행정처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관한 고민은 매우 깊어질 수밖에 없고, 오늘 위원님들께서도 다양한 의견들을 개진해 주신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다수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방송법에 현재 소유 지분 문제와 관련된 현실 적실성에 대한 일부 의문이 제기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다음 DMB 사업 자체의 시장 상황이 매우 열악한 상황인 점도 인정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법 개정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수차례 시정명령이 내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행정 상황들을 저희들이 결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가능치로 유예와 고발의 가능치가 있는데 어느 것이 이 상태를 좀 더 현실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 지점에서 위원님들의 의견이 나뉜 것 같습니다. 윤성욱 위원님께서 제기해 주신 시정유예가 가진 매우 경청할 만한 고려사항에도 불구하고 시정유예 조치를 저희가 하게 되면 이런 유동적인 환경을 빌미로 해서 법을 회피하려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행정기관은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책기관이 혹은 입법기관에서 법 개정을 통해 해결해야 할 부분과 행정법을 집행하는 행정기관이 고려해야 할 부분들의 차이를 고려한다면 법의 개정이 있지 않은 상황에서 법 개정의 필요성만을 이유로 해서 법 집행을 유예한다는 것이 가지는 그 엄중함을 저희들이 고려한다고 했을 때 차후 저희에게 예정되어 있는 권한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열어두는 것이 그리고 그것을 압박하는 것이 법의 취지에 최소한 부합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위원장으로서도 가지고 있어서 의결주문과 같이 고발하는 안에 위원장도 동의합니다. 다만, 그 의결주문의 방식과 관련해서는 고민수 위원님께서 제기해 주신 바가 의결주문이 원래 취지하고 있는 법령상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수정 의견에 저도 찬성합니다. 윤성욱 위원님 추가 발언하십시오.

○ 윤성욱 위원

- 다수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합니다. 다만, 제 발언에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정책적 고려는 두 번째 사안이고, 제가 지금 유예 의견을 드린 것은 첫 번째가 이것을 이행하는 것이

불능한 상태다, 이행 불능 상태라는 점을 주요한 근거로 제시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 김종철 위원장

- 여기서 향후 피심인이 취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논의를 자세하게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그것이 과연 불능 상태인지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을 제가 부기하는 것으로 마무리했으면 합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이 나뉘어집니다만 저희가 정립해 오는 의사진행의 방식에 따라 명시적으로 확인된 정족수를 초과하는 다수 위원님께서 의결주문의 기본 내용에 대해 찬성해 주셨기 때문에 이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혹시 추가 발언 있으십니까?

○ 최수영 위원

- 의결주문을 바꾸는 것입니까?

○ 김종철 위원장

- 바꾸는 부분에 대해서,

○ 최수영 위원

- 그것도 동의를 구하시는 것이지요?

○ 김종철 위원장

- 제가 그 점을 놓친 것 같습니다.

○ 최수영 위원

-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 김종철 위원장

- 저만 찬동 의견을 냈습니다. 죄송합니다. 진행에 미숙함이 있었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해 이의가 있는 것으로 보고 의결주문을 고민수 위원님께서 수정해야 한다, 즉 고발권의 법적 근거를 명시하자는 수정 의견을 주셨고, 그에 대한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최수영 위원

- 저는 동의합니다.

○ 류신환 위원

- 저도 동의합니다.

○ 김종철 위원장

- 류신환 위원님도 동의 의견을 주셨습니다.

○ 이상근 위원

- 저도 동의합니다.

○ 김종철 위원장

- 이상근 위원님 동의 의견을 주셨습니다.

○ 윤성욱 위원

- 저는 이것이 표결이어서 소수 의견으로 나뉘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맞습니까?

○ 김종철 위원장

- 예, 의견은….

○ 윤성욱 위원

- 그리고 동의하신 분의 의견만 우리가 고발 조치하는 것에 대해서만….

○ 김종철 위원장

- 저희가 의견을 수렴할 때 복수안에 있어서 의결을 했고, 지금은 윤성욱 위원님께서 아예 의결 자체에 대해 반대 의견을 주시는 것으로 해서 정식 의결과정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방송법 제8조 제13항을 시정명령을 위반한 경남기업(주)을 관계기관에 고발하는 안건에 대해 참석위원 6인 중에서 5인이 찬성하고 윤성욱 위원님 1인이 반대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방미통위법 제13조 제2항에 따라 다수결에 의해 이 안건은 의결주문의 취지에 따라 결정되고, 다만 상정된 안건의 의결주문의 내용은 법령을 더 명확히 밝혀서 수정하는 것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안건은 의결주문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방송법이 정한 절차를 유지하고 규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고발하는 것에 대한 의미를 해당 기업이 무겁게 받아들일기를 고대합니다. 다만, 현재 방송법상 소유 규제가 국가경제 성장과 미디어 환경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충분히 경청할 여지가 있고 입법 개선이나 향후 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도 병행을 해야 한다는 점도 의견이 많이 모아졌습니다. 사무처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발굴해 주시고 필요한 노력들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나. 위성방송사업자 재허가 및 역외 재송신 승인에 관한 건 - (주)케이티스카이라이프 - (2026-15-439)

○ 김종철 위원장

- <의결사항 나> “위성방송사업자 재허가 및 역외 재송신 승인에 관한 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동완 뉴미디어정책과장

- “위성방송사업자 재허가 및 역외 재송신 승인에 관한 건” 보고드리겠습니다. <1> 의결주문입니다. <가> 주식회사 케이티스카이라이프주식회사에 대해 [별지]와 같이 조건을 부가하여

재허가를 하되, 허가 유효기간은 7년으로 한다. <나> 주식회사 케이티스카이라이프에 대해 OBS경인TV 역외 재송신을 승인하되, 승인 유효기간은 7년으로 한다. <2> 제안이유입니다. 2025년 재허가 및 역외 재송신 승인 대상인 주식회사 케이티스카이라이프에 대한 재허가 및 역외 재송신 승인 여부를 심의·의결하기 위함입니다. <3> 재허가 및 역외 재송신 승인 대상 사업자 현황입니다. 대상 사업자인 (주)케이티스카이라이프는 전국을 방송구역으로 하고 있으며, 가입자 수는 2025년 상반기 기준으로 272만 523명입니다. <4> 주요경과는 생략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5> 재허가 등 심사위원회 구성·운영입니다. 먼저 심사위원회 구성입니다. 심사의 공정성, 투명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해 심사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방송·미디어 분야 2인, 법률 분야 1인, 경영·경제·회계 분야 2인, 기술 분야 2인, 시청자·소비자 분야 1인 등 각 분야 전문가 9인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나> 심사위원회 운영방향입니다. 「방송법」 제17조 및 「방송법」 제78조 등 방송법령에 근거하여 심의·의결한 「유료방송 재허가 및 역외 재송신 승인 세부계획」의 기본적인 운영 방향을 따르되, 심사의 객관성과 투명성 제고, 사업자 행정부담 완화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심사원칙 하에 심사를 수행하였습니다. 먼저 과거 정성적 평가 중심에서 탈피하여 당초 계획 대비 이행 실적, 이전 재허가 기간 대비 실적 등 총 33개의 정량적 지표를 발굴·활용하여 심사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였습니다. 두 번째로 재허가 조건 부과 시, 법령상으로 이미 규율 가능한 사항이나 단순 권고사항 등은 과감히 제외하고 필요한 최소한의 조건만 부과하여 사업자의 행정부담을 최소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성방송사업자로서의 본연의 역할과 기능 수행은 지속 담보할 수 있도록 관련 사항을 재허가 심사 평가와 조건 부과 시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심사위원회 주요 심사의견 및 심사평가 결과입니다. 먼저 재허가 관련 사항입니다. 심사평가 결과 총점 1,000점 만점 중 697.52점을 받아 재허가 기준 점수인 650점 이상을 획득하여, 재허가가 '적격'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업계획서의 성실한 이행, 위성방송의 지속가능성 확보 및 본연의 기능 수행, 그리고 이사회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 등 총 5개의 조건을 부과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습니다. 주요 심사의견입니다. 전반적으로 법령이나 과거 재허가 조건에 대한 이행 실적, 그리고 당초 사업계획의 이행 현황 등이 대체로 양호하며, 다만 제출된 사업계획서의 철저한 이행 담보를 위해 관련된 조건 부과 등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두 번째로 이사회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고, 경영 투명성 증진을 위한 소위원회 기능 강화 등 실질적인 노력도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난시청 해소, 보편적 시청권 보장 등 위성방송사업자 본연의 역할과 기능 수행을 위해 더욱 많은 노력이 요구된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다음으로 역외 재송신 승인 관련입니다. 심사 평가 결과, 심사위원 전원이 모든 심사 사항에 대하여 적격으로 평가하여 역외 재송신 승인에 대해 '적격'하다는 의견입니다. 승인유효기간은 위성방송사업 재허가 기간과 동일하게 7년으로 하였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주요 심사의견입니다. 경인지역과 서울지역이 사실상 동일 생활권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OBS경인TV 역외 재송신은 지역정보의 원활한 제공, 시청자의 불 권리 향상 등에 기여할 수 있고, 케이블TV나 IPTV가 이미 역외 재송신 승인을 받았다는 점을 참고했을 때 매체 간 형평성 확보 측면에서도 적절할 것으로 보이고, 지역적·사회적·문화적 필요성 측면에서도 역외 재송신 승인이 타당하다는 의견입니다. <7> 검토의견입니다. 방송법령, 그리고 재허가 등 심사위원회 심사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허가 여부와 조건(안) 등을 검토하였습니다. <가> 재허가 여부 및 유효기간입니다. 심사평가

결과, 총점 1,000점 만점 중 650점 이상을 획득한 (주)케이티스카이라이프에 대해 재허가 의결이 타당하다는 의견입니다. 단, 무선국 2기 대상 방송사업 폐업신고에 대한 심사위원회의 적격하다는 검토 결과를 반영하여, 무선국 22기를 대상으로 재허가하도록 하였습니다. 허가유효기간은 방송법령 및 심사위원회 심사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7년을 부여하도록 하였습니다. <나> 재허가 조건입니다. 사업계획서의 성실한 이행, 위성방송의 지속가능성 확보 및 본연의 기능 수행, 그리고 이사회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 등 이와 관련된 [별지]와 같이 재허가 조건(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역외 재송신 승인 여부 및 유효기간입니다. 심사평가 결과, 심사사항 모두 '적격'으로 평가받은 (주)케이티스카이라이프에 대해 역외 재송신 승인 의결이 타당하다는 의견입니다. 승인유효기간은 심사위원회의 심사의견을 반영하여 재허가 기간과 동일하게 7년으로 부여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오늘 위원회에서 안건을 의결해 주시면 방송법 제17조 등 관계법령에 근거하여 재허가 심사 결과 및 시청자의견 반영 여부를 오늘 공포하고 6월 중에 허가증을 교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김중철 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이상근 위원

- 제가 동의하지 않는 것은 아닌데 (주)케이티스카이라이프 무선국 2기를 대상으로 해서 폐업 신고를 했었는데 원래는 24기였는데 22기로 한다는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약간 상반되는 것이 보편적 시청권과 난시청 해소라고 하는데 2기가 줄어들어도 불구하고 보편적 시청권과 난시청 해소가 과연 가능한지, 그것이 약간 논리적으로 모순이 발견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 혹시 평가하실 때 어떠한 의견이 있었는지 여쭙고자 합니다.

○ 강동완 뉴미디어정책과장

-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심사위원회하기 전에 기술전문가들의 자문을 한 번 받았고, 그리고 심사위원회에서도 이 부분을 논의했습니다. 제일 중요하게 본 것이 방송서비스 품질 저하나 장애 발생 가능성이 있느냐는 부분이 제일 핵심이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술자문 결과나 심사위원회 의견에서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 이상근 위원

- 나중에 보고서를 제출해 주시면 저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 강동완 뉴미디어정책과장

- 예,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 김중철 위원장

- 최수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최수영 위원

- 4쪽 주요 심사의견을 보면 “사업계획의 이행 현황도 대체로 양호함. 다만, 제출된 사업 계획서의 철저한 이행이 담보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며, 관련된 조건 부과 등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함”이라는 심사 의견이 담겼는데, 그러면 관련된 조건 부과가 된 것이 재허가 항목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 강동완 뉴미디어정책과장

- [별지]에 보시면,

○ 최수영 위원

- 저도 [별지]를 보고 있습니다.

○ 강동완 뉴미디어정책과장

- 재허가 조건을 보시면 <조건 1>이 관련 사항입니다. 쪽 읽어드리면 “재허가 심사를 위하여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사업자가 제시한 사업계획서 목표 달성이 어려울 경우에는 저희 위원회에 보고하고, 저희 요청에 적극적으로 응해야 한다” 이런 내용이 들어갔습니다.

○ 최수영 위원

- 좀 더 관련된 조건 부과가, 물론 우리가 조건 부과할 때는 대단히 규제를 완화하고 그다음에 최소화한다는 원칙이 있긴 합니다만 구체성이 있었는지 봤는데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는 강제조항으로 여기에 같음했다는 의미지요?

○ 강동완 뉴미디어정책과장

- 예, 맞습니다.

○ 최수영 위원

- 알겠습니다.

○ 김종철 위원장

-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고민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고민수 위원

- 이 건과 관련된 것은 아닌데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이번에 심사평가 점수가 1,000점 만점에 697.52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많이 받았다면 많이 받았고 적게 받았다면 적게 받은 것일 수가 있지요. 왜냐하면 기준점수가 650점이니까 650점에서 한 40점 넘게 더 받은 것인데 여기서 의문이 제기됩니다. 저는 심사위원장을 했습니다만 심사결과에는 전혀 관여할 수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심사위원분들이 내놓은 결과만을 받아들은 입장에서 우리 위원님들과 동일한 조건입니다. 그런데 그때부터도 제가 가지고 있던 의문이 뭐냐 하면 1,000점 만점에 697점이면 1,000점 만점에 990점을 받은 사업자와 1,000점 만점에 겨우 650점 넘는 사업자에

대해 동일한 취급을 해야 할 것인가라는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방송법을 살펴보다도 사업자가 획득한 점수의 많고 적음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취할 수 있는 차별적 처우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결국 허가기간의 상이한 설정밖에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고민을 한 번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1,000점 만점인데 900점을 받은 사업자와 650점을 겨우 넘은 사업자를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 것인가에 대해서 검토해서 세부 기준을 한 번 마련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의견을 하나 드립니다. 그다음에 소소한 문제인데 역시 의결주문 표현과 관련된 것입니다. 의결주문 <가> “주식회사 케이티스카이라이프에 대해 [별지]와 같이 조건을 부가하여 재허가를 하되”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재허가를 한다. 허가유효기간은 7년으로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더 명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찬가지로 의결주문 <나>도 ‘주식회사 케이티스카이라이프에 대해 OBS경인TV 역외 재송신을 승인한다. 승인 유효기간은 7년으로 한다’ 이렇게 하면 깔끔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중철 위원장

- <의결안건 가>에 이어서 <의결안건 나>에 대해서도 고민수 위원님께서 의결주문의 형식에 대해 수정의견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새롭게 출범하는 입장에서 위원회가 기본적으로 정하고 있는 방향성은 우리가 승계한 위원회의 관행을 원칙적으로 승계하더라도 법령이나 변화된 환경 또 저희 위원회가 표방하는 비전이나 정체성과 관련되어 수정하거나 바꿀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점검해서 바꾸어 나가자, 이런 방향성이 있습니다. 의결주문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오늘 고민수 위원님께서 여러 의견들을 주시는데 사무처 차원에서 한 번 종합적으로 의결주문 형식의 통일성·확일성 그리고 법령과의 정합성 등을 고려하는 논의들을 진행해 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일단 의결주문과 관련된 문제 제기가 있었다는 정도로 그 의견을 반영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에 대해서는 특별한 의견을 주시지 않은 것으로 이해됩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면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오늘 의결 이후 KT스카이라이프는 고객에게 보다 안정적인 방송서비스를 제공하고 부가된 재허가 조건도 충실히 이행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사무처에서는 허가증 교부 등 후속 행정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7. 보고사항

가. 2024년도 종합편성·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재승인조건 및 권고사항 이행실적 점검결과에 관한 사항

○ 김중철 위원장

- <보고사항 가> “2024년도 종합편성·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재승인조건 및 권고사항 이행실적 점검결과에 관한 사항”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희수 방송지원정책과장

- 먼저, 보고사유입니다. '24년도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및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재승인 조건 및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실적 점검결과를 보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경과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검개요입니다. 점검대상은 종편·보도PP에 부가된 재승인 조건 34건 및 권고사항 27건입니다. 다음 3쪽입니다. 대상기간은 '24년 1년간이며, 대상방송사업자는 종편 4사와 연합뉴스TV입니다. YTN의 경우, '24년 재승인조건과 YTN 최대액출자자 변경승인 조건 이행점검 결과를 별도로 보고드릴 예정입니다. 다음 재승인조건 이행 여부 점검결과입니다. 점검결과 재승인조건 총 34건 중 이행이 29건, 미이행이 5건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조건별 이행 현황으로 1) 연도별 콘텐츠 투자계획 준수로 종편PP 4개사 모두 이행하였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2)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 제고 관련 제출된 계획을 준수하라는 조건은 점검결과 JTBC·채널A·연합뉴스TV가 이행, TV조선·MBN이 미이행으로 확인되었습니다. JTBC는 이행이며, 다음 TV조선입니다. TV조선의 경우 제출한 사업계획의 전반을 이행하였으나 사업계획 중 총선·대선 시 종편 공동출구조사 1건 추진을 미이행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사업자는 사업계획 수립 당시에는 컨소시엄 형태의 공동 출구조사 시도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실제 선거 시점에는 각 방송사별로 독자적 선거 예측 시스템과 조사 계획을 가지고 있어 TV조선의 제안과 노력만으로는 추진에 한계가 있었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은 단독으로 이행하기에 한계가 있던 미이행 사유와 그 외 계획 전반을 이행한 점 등을 고려하여 제출된 계획의 성실한 이행을 촉구하도록 행정지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MBN입니다. MBN은 제출된 사업계획 중, 메인뉴스 <사실확인> 코너를 월 2회 이상 송출하는 것과 선거 시 전문기관·단체와 협업을 통한 정책공약 검증, 홈페이지 시청자 의견 피드백 코너 신설 등 총 3건의 미이행이 확인되었습니다. 사업자 의견으로 메인뉴스 <사실확인> 코너가 인사이동 등으로 일부 누락되었고, 이후 '24년 8월부터 댓글 팩트체크 코너인 <올댓체크>를 운영하고, '26년 4월부터 기존 팩트체크팀을 확대 개편하여 팩트체크 기사를 주 1회 방송 중이며, '24년 총선의 경우에는 관련 학회 등의 협의 결과 지역마다 공약이 상이하고 전국적 파급력이 약하다고 판단해 공약 평가단 대신 외부 전문가로 <공정 선거방송 모니터단>을 구성해 공약 보도에 대한 전문가 자문을 받았으며, '25년 대선 시 한국공법학회 등과 대선 공약을 심층 검증하였고, 홈페이지 시청자 의견 피드백 코너 신설은 기존의 프로그램별 시청자 게시판과 중복되고 개인정보 포함 우려 등 문제점을 제거하고, 홈페이지 내 코너로 '26년 5월 개설하였다고 소명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1안>은 팩트체크 및 시청자 의견 피드백 코너 운영은 공적책임·공정성 제고를 위한 사업계획의 중요 사항을 미이행한 것에 해당하고, 이후 '25년, '26년 등에 이행한 것으로 소명하였으나 점검 대상 기간인 '24년에 이행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시정명령하는 안입니다. <2안>은 제출한 계획 전반의 성실한 이행을 촉구하는 행정지도가 되겠습니다. 채널A는 이행하였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연합뉴스TV의 경우도 이행하였습니다. 3) 경영투명성 확보 및 외주상생 등 관련 추가계획의 준수는 MBN에 부가된 조건으로 점검 결과는 이행입니다. 4) 방송심의 법정제재를 연간 5건 이하, 선거방송 심의 법정제재를 연간 2건 이하로 유지하라는 조건입니다. 다음 8쪽입니다. 점검결과 MBN과 TV조선은 재승인 조건 관련 방송 심의 법정제재가 없었으며, JTBC와 채널A는 소송이나 재심 중인 건을 제외하면 '24년도 방송심의 법정제재가 없어 4사 모두 이행으로 나타났습니다. 5) 시사·보도 프로그램의 공적책임·공정성 진단 조건은

대상 사업자 4개사 모두 이행하였습니다. 다음 9쪽 보고드리겠습니다. 6) 상품이나 용역의 효과나 효능을 다루는 경우에 협찬사실을 고지하라는 조건입니다. 점검결과 MBN과 TV조선은 이행이고, 채널A·JTBC는 미이행입니다. MBN과 TV조선은 재승인 조건 관련 협찬고지 위반이 없고, 최소 3회 이상 프로그램에서 고지하여야 하나 2회 고지된 사례가 채널A 1건, JTBC 2건입니다. 채널A의 경우는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속보 자막으로 협찬고지 자막이 가려졌고, JTBC는 2건 모두 계엄 관련 <뉴스특보>로 해당 프로그램 송출이 중단되어 발생하게 된 건입니다. 검토의견은 속보 및 뉴스특보로 인해 협찬고지 누락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던 점을 고려하여 시정명령과 행정지도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7) 외주프로그램 제작 관련 방미통위가 제시한 기준을 준수하라는 조건은 모두 준수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8) 목적과 기능에 맞는 편성위원회를 운영하라는 조건은 TV조선에 부가된 것으로 제작·편성과 무관한 논의가 발견되지 않았고, 프로그램 편성·개편 등이 논의되어 이행으로 나타났습니다. 9) 대표이사로 미디어 분야 전문경영인을 선임하고, 사외이사과 감사는 최다액출자자와 관련 없는 독립적인 자로 선임하라는 조건입니다. 채널A의 경우 미디어 분야 전문경영인으로 대표이사를 선임하라는 조건의 경우 회장과 부회장 각자 대표 체제로, 회장은 최다액출자자의 특수관계자에 해당하고, 각자 대표 중 경영총괄 1인(회장)이 최다액출자자의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여 조건 부가 취지인 방송 독립성 강화에 위배되는 측면이 있으나 지상파방송사업자 재허가 조건 이행 점검 시에 각자 대표 체제의 유사한 건에 대해 이행으로 판단한 사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미이행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입니다. 다음 사외이사는 최다액출자자와 관련 없는 독립적인 자로 선임하라는 조건은 이행하였습니다. 세 번째, 감사는 최다액출자자와 관련 없는 독립적인 자로 선임하라는 조건에 대해서는 감사위원회 위원을 대표이사가 겸하고 있고, 동아일보사와 채널A는 동아미디어그룹 계열사이므로 대표이사는 최다액출자자의 특수관계자에 해당합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사업자는 계열사 임원을 특수관계자로 해석하기 어렵고 상법상 감사와 감사위원은 명백히 구별되므로 재승인 조건의 감사 요건은 감사위원회 체제의 채널A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방송법 시행령 및 공정거래위원회 의견 조희 회신에 따르면 채널A 임원이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자에 해당하고, 감사위원회는 감사에 갈음하여 설치되는 조직이고 감사에 관한 상법 규정 대부분이 준용되며, 채널A는 '24년 부가된 감사 관련 재승인 조건이 최초 설립 시부터 운영되던 감사위원회에 부가된 것임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고, 방송의 독립성·전문성 강화를 위해 부가된 해당 재승인 조건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시정명령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연합뉴스TV는 조건을 모두 이행하였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10) 재무건전성을 해할 수 있는 최대주주와 내부거래를 금지하라는 조건입니다. MBN·연합뉴스TV 모두 이행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11) 소각한 자기주식 금액 이상의 자본금 증가방안을 제출하고 이행하라는 조건입니다. MBN에 부가된 것으로 MBN은 자체 보유하고 있던 자본잉여금 일부를 자본금으로 전입시키는 무상증자 방안을 마련하고, 신주를 발행하여 무상 증자를 이행하였습니다. 다만, '24년 2월 자본금 증가방안을 제출하였으나 방통위 미구성으로 방통위와의 협의가 불가하여 '25년 2월 협의 이후 이행을 완료하였으므로 점검대상 기간인 '24년이 도과한 이후 완료되었으나 사업자 귀책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미이행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입니다. 12) 최대주주 소속 기자와 PD의 파견을 해소하라는 조건은 연합뉴스TV에 해당 사항으로 이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3)

'25년 이후 연합뉴스TV의 광고영업 대행을 금지하라는 조건도 이행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14) 최대주주 대표자의 방송법 준수 이행각서 제출도 MBN에 대한 것으로 이행하였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권고사항 이행 여부 점검결과입니다. 점검결과 권고사항 총 27건 중 이행이 19건, 미이행이 8건으로 나타났습니다. 동일 유사한 내용으로 권고사항을 분류하면 총 16개로 이 중, 보도·제작·편성 분야 간부 임명 시 종사자 의견 반영 등 3개의 권고사항에서 미이행이 확인되었습니다. 세부 내용은 정리한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6쪽입니다. 주요 권고사항 이행 현황입니다. 1) 보도·제작·편성 분야 간부 임명 시 종사자 의견 반영 제도를 마련하라는 권고는 MBN의 경우 보도국장 신입투표제를 운영 중이나 제작·편성 분야에는 관련 제도가 없으며, 채널A·JTBC·TV조선은 관련 제도 전반을 미운영하여 종편 4사 모두 미이행입니다. 2) 방송프로그램의 연도별 균형 있는 제작·편성을 위해 노력하려는 권고는 JTBC·채널A 모두 이행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3) 최대주주 특수관계자가 사내이사를 하지 않도록 노력하라는 권고에 대한 점검 결과는 JTBC·TV조선·채널A는 미이행, 연합뉴스TV는 이행입니다. 세부 내용은 아래 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8쪽 보고드리겠습니다. 4) 중장기적 재정건전성 확보 및 채무 상환을 위한 자금조달 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하도록 노력하라는 권고입니다. JTBC에 부가된 것으로 점검결과 미이행입니다. 제작비 절감과 신종자본증권 발행 등을 통해 채무 건전성 개선에 노력하였으나, 채무상환 규모 및 자금조달 규모가 당초 계획을 크게 상회하고, 전년 대비 상환채무 규모와 자금조달 규모가 증가하는 등 전반적인 재무상황이 악화된 바, 이행노력이 미흡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6> 처리 방안은 앞서 보고드린 개별 내용을 간단하게 <표>로 정리한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9쪽 향후 계획입니다. 오늘 보고를 접수해 주시면 시정명령은 사전 통지하고 행정지도 조치하며, 6월 중으로 시정명령에 관한 건을 별도로 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김중철 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이 사안은 보고사항이고 결정된 부분들에 대해 행정절차를 향후 밟아서 최종적으로 의결사항으로 다시 상정하게 된다는 점 환기시켜 드립니다. 위원님들 의견이나 질문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이상근 위원

- 지금 보고된 것이 2024년도 사업에 대한 보고인 것이지요?

○ 권희수 방송지원정책과장

- 예.

○ 이상근 위원

- 알겠습니다.

○ 김중철 위원장

- 정확하게 2024년 1년 동안의 이행실적에 대한 점검결과 사항이라는 점 유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최수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최수영 위원

- 이것이 2024년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종편 같은 경우 재승인해 줄 때 재승인 조건이 있고 권고사항이 있는데 어쨌든 그 당시를 놓고 보면 우리가 허가해 주거나 승인 당시에 우리가 부가한 것을 보면 전망과 목표를 담은 것이지, 그것이 정말 꼭 이행되어야 한다, 물론 이행되어야지요. 그런데 그 이후 시장의 환경 변화나 현실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기계적으로 판단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업자가 사업계획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도 해당 사유의 합리성과 현실성을 조금 감안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계획이 현재도 유효한지, 또 미이행한 사유가 상당한 것이 있는지, 그다음에 공적책임 수행에 실제 문제가 있었는지를 종합적으로 들여다봐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말씀 하나 드릴 것이, 일단 처리방안을 쪽 보면 MBN의 경우 시정명령과 행정지도(안) 두 가지가 올라왔습니다. 이것이 뭐냐 하면 재승인 조건이지요. 메인 뉴스의 사실 확인 여부 코너 월 2회 이상 송출을 위반했다는 이야기인데 저는 재승인 조건은 기본적으로 상당히 엄격하고 중하게 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업자 소명을 보면 2024년 8월부터 디지털국에서 댓글 팩트체크 코너를 운영하고 있고, 또 올해 4월부터는 기존의 팩트체크팀을 확대해서 하는 노력을 집행하고 있다는 점을 사후적으로 감안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선거 시 전문기관·단체와 협업을 통한 정책공약 검증, 이것이 미이행이 맞는데 공약평가단 대신 공적선거방송모니터단을 구성해서 공약과 관련한 보도에 대한 외부 전문가 자문을 받았는데 저는 이 부분도 한 번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저희가 대선·총선, 지방선거 각급 단위의 선거가 있습니다만 이것이 공약검증하는 것이 대선 단위는 간결하고 매우 쉽습니다. 그런데 총선과 지선으로 넘어가면 이것이 전국단위 선거 플러스 각 지역별로 상이하거나 또 굉장히 복잡다단한 비교·검증의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저희가 통으로 이야기해서 말 그대로 “왜 공약검증을 다 이행하지 않았느냐”라고 지적하기에는 사업 현장성 측면도 있고 현실성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봐서 이 부분은 선거 단위별로 보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측면에서 이것 또한 시정명령까지 가는 것이 과하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홈페이지 관련 시청자 의견도 마찬가지로 봅니다. 바로 이행을 못한 것은 맞는데 어쨌든 지난 4월부터 홈페이지에 시청자 피드백 코너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이런 노력했던 것들을 고려해서 저는 행정지도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렇게 제 의견을 드리고, 이와 관련해서 종합적으로 한 말씀드리면 이것이 2024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 방통위가 이것을 제때 2024년도에 사업자들을 불러서 “우리가 검토했으니까 이것을 시정하십시오”라고 지적했다면 저는 사업자가 시정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2024년을 지금 여기에서 다루고 있고, 또 조만간 2025년을 다룰 예정입니다. 그러면 어찌 보면 연도는 구분되어 있지만 2024년과 2025년이 통으로 올라와서 한꺼번에 심사를 받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심사위원들이 볼 때는 ‘2024년도 시정명령이 갔고 행정지도가 갔는데 2025년도 똑같이 반복했네, 도대체 사업자가 개전의 정이 없다’는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지요. 이 부분은 저희도 일정 부분 행정기관으로서 약간의 책임이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2024년 건을 의결하지만 곧 2025년분이 또 올라올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2024년 부분을 오늘 심의·의결하더라도 그것을 논의할 때는 약간 연결성을 가져서는 곤란하다, 끊어주고 가는 우리 위원회의 합의와 지혜가 필요하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올라온 사안인데 저희가 2년치를 1년에 통으로 본다는 것이 과연 사업자들에게 또 어떤 불이익을 끼칠 수 있는지, 이 부분도 들여다봐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일단 제 발언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 김중철 위원장

- 감사합니다. 이상근 위원님께 구원 요청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 이상근 위원

- TV조선이 했던 출구조사 추진 문제에 대해서 느끼는 것인데 저도 예전에 통계도 했었는데 통계라는 것이 샘플링이 많으면 정확한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지상파는 3사가 공동으로 하는데, 이번에 JTBC가 했던 것 같습니다. 정확도가 약간 지상파보다는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종편도 만약 다음에 하게 된다면 종편 4사와 보도채널도 있으니까 같이 샘플링을 늘려서 정확성을 높이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해서 권고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 김중철 위원장

- 감사합니다. 류신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류신환 위원

- 저는 최수영 위원님 말씀하신 MBN 관련해서 의견을 드리려고 합니다. 의견을 드리기에 앞서 한 가지 사무처에 사실확인으로 질문드릴 것이 있는데 저희들이 재승인 조건을 부가하면서, 예를 들면 '이런 공적책임·공정성 확보 방안에 관한 추가 계획을 3개월 내에 제출해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런 조건들을 부가하지 않습니까? 그때 각 종편별 추가 계획이라는 것이 내용적으로 다들 차이가 조금씩 있는 것이지요?

○ 권희수 방송지원정책과장

- 예, 그렇습니다.

○ 류신환 위원

- 정도도 차이가 있고, 그 부분 차이에 대해 저희들이 그것을 균일하게 별도로 조정하는 작업도 있습니까?

○ 권희수 방송지원정책과장

- 일반화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통상 제출한 사업계획을 준수하라고 하면 재승인 심사를 받을 때 제출했던 사업계획을 준수하라는 것이고, 심사위원회에서 그 계획으로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할 때 추가 개선계획을 제출하라고 하고, 그리고 추가 개선계획을 제출해서 이행하라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추가 개선계획을 내서 승인을 받고 이행하라고 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승인의 과정을 거치게 되면 지적된 것 중에서 미흡한 부분이 반영되었는지를 협의해서 최종 승인 하고 준수하도록 하는 절차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류신환 위원

- 그러면 지금 주제가 된 공적책임·공정성 이 항목과 관련해서는 특히 쟁점은 팩트체크와 시청자 의견 반영이 중요한 주제인데 이것과 관련해서는 방송사업자별로 그것을 구현하는 방식에 대해 계획을 조금씩 다르게 제출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때 이것을 균질하게 하라든가 이런 식의 이야기는 사업자별로 사정이 다를 것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도 그렇게까지는 못할 것 같은데, 혹시 형평이나 균형을 맞추기 위한 특별한 고려들이 재승인 과정에서 작용을 했습니까?

○ 권희수 방송지원정책과장

- 말씀하신 것처럼 각 사에 맞는 시스템이나 제도를 운영한 것이라서 같은 목적이라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제도에는 일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들어서도 팩트체크 부분에 있어서는 각사에서 좀 더 강화하는 노력을 하고 있어서 기존에는 전담자가 지정되어 있는 사업자가 있고, 그렇지 않은 곳이 있었고, 전담인 경우에도 직급이 상급자인 경우와 실무진인 경우로 구분되는 경우도 있었는데 그 부분도 일정 부분 좀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 균질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 류신환 위원

- 알겠습니다. 형평성 차원에서 제가 먼저 사실확인을 부탁드립니다. 방금 말씀해 주신 것 포함해서 제 의견을 드립니다. 아까 최수영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고, 특히 MBN의 경우에 팩트체크와 시청자 의견 반영을 위해 2026년도부터 이것을 구체적으로 이행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내용적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제출해 주신 자료를 통해 그 외에 재승인 조건과 이행과정에서 제출한 다양한 공적책임·공정성 확보 방안을 위한 다양한 제도들이 많았고, 그것들의 상당 부분을 이행했다는 점도 확인했습니다. 다만, 아까도 제가 질문하면서 의견을 말씀드렸지만 다른 가이드라인이나 기자들 사이 8단계의 검토단계를 만든다거나 제도적 방안인데, 또는 가이드라인으로 기준을 설정해서 내부 구성원들로 하여금 지키게 한다 해서 다양한 가이드라인들은 많이 제정하셨는데 이것들이 실효적으로 작동해서 지켜지고 있는지 이 부분은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팩트체크나 시청자 의견 반영이라는 쟁점과 관련해서 정말 가짜뉴스나 또는 어떤 편향된 보도 등으로 인해 여론이 왜곡되는 상황을 막는 것이 우리 사회에 굉장히 시급한 과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효적인 실천 방안 이런 것들을 평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아까 최수영 위원님도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주셨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사실확인> 코너를 만들고 그것을 월 2회 이상 방송하겠다, 시청자 의견을 반영하는 사이트를 만들고 그것을 실질적으로 반영하겠다는 약속들은 다른 제도 개선 노력들도 중요하지만 구체적으로 그러한 노력들이 현실에서 실현되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조건들이 이행되지 않은 부분은 문제가 있고, 그것은 방미통위가 아까 말씀드렸던 가짜뉴스나 편향 보도로 인한 여론 왜곡 방지를 위한 정책수단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또 그러한 생각이므로 저는 시정명령(안)에 동의하는 입장입니다. 다만, 아까 제가 질문에서 추가 계획 승인할 때 형평성은 향후에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는 오늘 우리가 의결을 하면 다른 방송사업자들에 대한 재승인 계획 이행점검할 때 강화된 기준과 조건을 동일하게

형평성 있게 적용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려 다른 방송사업자들도 재허가·재승인 과정에서 약속한 공적책임·공정성 확보 방안 등을 잘 지켜주십사 그런 당부의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행실적 감독 과정에서 사업자 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책 강화의 관점에서 오늘 우리가 시정명령을 의결하게 된다면 다른 방송사업자들의 이행조건 이행에 관해서도 형평성 문제를 고려하여 디테일한 부분을 잘 살피서 감독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정명령(안)입니다. 이상입니다.

○ 김종철 위원장

- 감사합니다. 윤성욱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윤성욱 위원

- 저도 간담회 때나 또 류신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정명령(안)에 동의합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재승인할 때 계획을 보고 재승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계획서에 사업자들이 어떻게 약속했고 이후에 그것을 수행했는지 관리·감독하는 것이 우리 위원회로서는 대단히 중요한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매년 실적 점검할 때 엄정하게 적용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래야 이후 사업자들이 또 재허가나 재승인 심사 받을 때 실현가능한 사항들을 계획서에 넣고 그것을 실제 현실 속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정책을 유도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세부 계획의 준수 부분은 엄정하게 적용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MBN 같은 경우에는 ‘메인 뉴스에 월 2회 송출하겠다’ 이것도 팩트체크 관련해서 약속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선거 기간에 공약 검증하겠다’ 이 부분도 MBN과 같은 종합편성채널이 공정한 선거방송이 수행될 수 있도록 실천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약속이었다고 봅니다. 이 사회적 약속을 해놓고 결국은 수행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다음에 홈페이지에 시청자 의견 코너 신설은 얼핏 보면 이것이 홈페이지에 코너 하나 신설하기로 했는데 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MBN이 처음에 하겠다고 한 계획서 부분은 시청자의 의견을 반영해서 프로그램의 개선으로 연결시키겠다는 약속이었다고 봅니다. 방송사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공적책임 중 하나였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건들을 하나하나 봤을 때 중요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도 간담회 때 논의했던 대로 시정명령 의견을 그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TV조선의 사안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공동출구조사였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단독 추진하기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을 감안해서 이번에 행정지도 결정에 동의하는 것이지, 추후에는 이렇게 추진할 수 없거나 현실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것들을 계획에 넣지 않도록 사업자들이 유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사무처에 부탁드릴 것은 실적 점검할 때 편성 관련된 부분들이 조금 있는데 추후 여러 가지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한 편성 실적들을 평가할 때 좀 더 자료에 근거해서 객관적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김종철 위원장

- 감사합니다. 고민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고민수 위원

- 저는 매번 회의 때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행실적 점검'이라고 되어 있는데 앞에 보면 '재승인 조건 이행실적 점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승인 조건이라는 것은 우리가 실무상 조건이라는 말로 쓰지만 이것은 행정행위의 부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조건이라는 것의 내용을 강학상 분류에 따라 보면 대부분 수익적 행정행위에 작위·부작위 급부, 수인의무를 결부시키는 부담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조건이라고 부르는 재승인 부관으로서의 부담을 지금 방식대로 부가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이고 타당하냐, 또 법 원칙에 맞느냐는 근본적인 문제 제기하고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앞서 류신환 위원님께서 확인하신 바와 마찬가지로의 관점인데 부관이라는 것은, 즉 부담이라는 것은 행정기관이 그 상대방에게 주된 행정행위를 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각종의 의무를 결부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재승인 과정이나 재허가 과정에서의 조건이라는 것은 심사위원회가 어떤 방식으로 부가시키느냐면 위원님들 확인하시다시피 '방송사업자의 사업계획서에서 제시한 계획을 준수하라' 이런 방식으로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류신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부관의 한계인 비례의 원칙, 평등의 원칙, 이익형량의 원칙, 명백 실현 가능한 것의 한계, 부당결부 금지의 원칙 이런 것들이 전혀 고려가 되지 않고 사업자들에게 부가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류신환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JTBC와 TV조선과 MBN와 연합뉴스TV와 YTN과 똑같이 재승인을 받았는데 부담이 각각 다른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우려가 나오는 것이지요. 비례원칙에 맞는 것이냐,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 아니냐, 이익형량 원칙에 반하는 것 아니냐는 문제 제기가 충분히 가능한 수준이다. 그래서 저는 근본적으로 우리가 재허가·재승인 때 부관을 부가하는 방식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지 않으면 행정행위의 실효성과 목적을, 적법성을 구현해 나갈 수 없다는 근본적인 문제 제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차원에서 보자면 저는 원래 사업자가 자기가 약속을 해놓고 나서 약속을 지키지 않는 행위를 행정기관에서 묵인 내지는 방관한다면 행정행위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차원에서 엄격하게 시정명령의 대상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을 갖고 있었습니다만 그간 방송통신위원회부터 이어져온 부관 부가 방식의 문제점을 깊게 고려한다면 잘못된 것을 알고도 이것이 계속해서 시정명령이라는 것을 부과해야 할지에 대해서 의문을 갖게 됐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이것이 중요한 조건이라고 하면 그 조건에 대해 우리가 부담을 이행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해 행정기관이 취할 수 있는 것은 행정벌이나 제재 아니면 강제집행밖에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행정지도라는 것이 과연 유효하고 적절한 수단인가에 대해서도 의문을 갖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 보고사항 안전에 대해서는 의견을 유보하겠습니다.

○ 김종철 위원장

- 고민수 위원께서 그동안 지속적으로 재허가·재승인과 관련된 조건과 권고의 형식으로 부가되어 있는 부분들의 이행 여부 판단에 있어서 그동안 법적 정합성 부분에 있어서 생길 수 있는 문제점들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주셨고, 이 사안의 경우에도 그런 문제의식에 바탕해서 의견을 주셨습니다. 오늘 재승인 조건 미이행과 권고사항 미이행과 관련해서 주로 의견을 위원님들께서 주신 부분들은 복수안으로 올라와 있는 MBN과 관련된 세부 사항 미이행 부분과 관련해서 시정명령으로 할지 행정지도로 할지에 관한 의견들을 주셨고, 지금까지 두 분께서 시정명령 의견을 주셨고 두 분께서 행정지도 의견을 주셨습니다. 금방 고민수 위원님께서 유예 의견을 주셨는데,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표명을 하지 않겠다는 의견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 같습니다.

○ 고민수 위원

- 예.

○ 김종철 위원장

- 간담회에서 하신 의견을 전체회의에서 변경하신 상황이 되어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한 고민들을 좀 더 나누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안을 제가 좀 더 종합적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무처에서 제안해 주신 부분과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나> 권고사항 미이행 부분과 관련해서 미이행의 주요 사항들이 확인되지만 권고라는 것이 가지는 법적 성격을 고려할 때 그 처리방안을 행정지도로 다수의 위원님들께서 간담회에서 표명해 주셨는데 오늘 고민수 위원님께서는 이 부분도 유예 의견을 주신...

○ 고민수 위원

- 저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권고사항은 조건도 안 되는데 거기다 대고 아무 의미 없는 행정 지도라는 것은 불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행정지도를 하지 말자는 의견입니다.

○ 김종철 위원장

- 유예가 아니고,

○ 고민수 위원

- 예.

○ 김종철 위원장

-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에 있는 권고사항 미이행 부분과 관련해서 현재 원안은 행정지도안인데 고민수 위원님께서는 행정지도도 할 필요 없다는 의견을 주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분들께서 다른 추가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인 행정지도안으로 저희 의견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저희들이 해온 방안대로 하면 일종의 복수안을 고민수 위원이 제안해 주신 것이고, 행정지도안과 행정지도도 하지 않는 안 중에서 6인 중에서 5인이 행정지도안을 채택해 주신 것으로 이해해서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재승인조건 미이행과 관련해서 처리방안이 사안별로 다릅니다. 이 점과 관련해서는 제가 보충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재허가·재승인 조건 및 권고사항 이행여부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대상이 되는 방송사업자별로 여러 가지 상이점이 있고, 이행점점이라는 특수성에 따라서 이행점점의 성격을 이해함에 있어서 이행점점의 결과에 의해서 향후 재승인·재허가 등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점에서 이 부분에 있어서 정합성을 제기하고 체계성을 제고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더 근본적으로는 고민수 위원님께서 제기해 주신 것처럼 향후 조건이나 권고 등 부관의 부가와 관련해서 행정행위로서의 엄정성을 더 제고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다는 점에 저도 공감합니다. 다만, 이전에 이루어져 있고 이미 도과한 사안과 관련해서 업무 처리를 해야 한다는 점에서 임의적으로 오늘 이 부분들을 결정해 나가고 정합성과 체계성을 제고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고민과 숙의와 종합적인 검토를 더 해서 좀 더 체계적으로 정립해서 향후 계획부터

이 부분들이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동안의 관행이나 저희들이 새롭게 정합성을 제고하기 위해 필요한 접근법들을 해야 하는데 특히 사실판단과 관련된 부분, 즉 이행여부와 관련된 사실판단과 관련되어서 엄격하게 판단하는 것이 옳다는 것이 위원님들의 공감대가 모아진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사안과 관련해서 조건이든 권고든 이행했는지 미이행했는지와 특히 사실판단과 관련되어 계획을 준수했는지 여부 등과 관련해서는 이행·미이행 부분들을 비교적 엄정하게 판단해 주셨습니다. 다만, 미이행된 조건이나 권고의 법적 성격이나 그 조건이나 권고가 부가된 본질적 목적과의 연관성 다음에 종합적으로 방송법 등에서 방송의 공적책임을 강화해서 이런 조건이 부가될 수 있도록 만든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보아서 구체적인 실체적 행정처분에 있어서는 다양한 방식으로 결정을 재량에 의해서 결정하는 방식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래서 이번 안건의 재승인 조건과 관련해서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 제고 관련 제출된 계획의 준수와 관련해서 방송사업자별로 항목이 구분됩니다. 예를 들어 TV조선의 경우에는 세부 사항 미이행이라는 부분은 같습니다. 다만, 그 내용이 종편 공동출구조사 계획을 이행하지 못한 것인데 이 조건의 성격을 볼 때 자기책임성 등을 완전하게 관철시키기에는 힘든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해서 행정지도안을 다수 의견으로 제시를 하게 된 겁니다. 논란의 주 대상이 된 MBN의 경우에는 역시 세부 사항은 사실판단과 관련해서 엄정하게 판단해서 모든 위원님들이 미이행이라는 점에 있어서 의견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다만, 내용에 있어서 메인뉴스 <사실확인> 코너 월 2회 이상 송출이라든지 선거 시 전문기관 협업 공약 검증이라든지 홈페이지 시청자의견 피드백 코너 신설 등 3건의 성격이라거나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 제고 관련 본질적 연계성이나 입법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미이행에 대한 처분의 종류를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와 관련되어 의견이 나누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1안>으로는 시정명령안으로 되어 있고, 지금 두 분의 위원님께서 찬성해 주셨습니다. <2안>으로 행정지도안으로 또 두 분의 위원님이 찬성해 주셨고, 한 분께서 조건 부가의 법적 성격의 엄정성에 의문이 있으므로 그 처리방안에 있어서 유보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유보 의견을 기권으로 봐야 합니까?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 고민수 위원

- 의사표시의 종류가 무엇무엇이 있습니까?

○ 김종철 위원장

- 우리가 이 의견을 어떤 종류로 봐야 할까를 논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 이우혁 의안·정책관리팀장

- 운영규칙에는 별도의 의사표시에 대한 종류가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의결안건이 아닌 보고안건이다 보니까 그에 대한 부가된 의견이라고 봐야 할 것 같고, 의결을 위한 정족수에는 들어가지 않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김종철 위원장

- 고민수 위원님께서 그런 해석론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 고민수 위원

- 어떤?

○ 김종철 위원장

- 금방 유예 의견은 보고사항이라는 안건의 성격상 의견 없음으로...

○ 고민수 위원

- 아니지요. 기타 의견으로 기록을 남길 수 있다고...

○ 김종철 위원장

- 기타 의견으로 기록한다는 것입니까?

○ 고민수 위원

- 예.

○ 김종철 위원장

- 그러면 이것은 정족수와 상관없는 문제가 되는 것입니까?

○ 고민수 위원

- 보고안전입니다.

○ 이우혁 의안·정책관리팀장

- 보고안전입니다.

○ 김종철 위원장

- 그래도 이것은 정족수에 의해서 보고안전이라도 우리가 어떤 행정조치를 할 것인가를 잠정적으로 결정하고 당사자에게 통보해서 향후 의결해야 할 사항이 되기 때문에 단순히 보고사항이라고 해서 저희가 기타안전으로 해서 정족수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볼 수는 없는 사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류신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류신환 위원

- 위원장님이 방금 지적하셨다시피 저희들이 오늘 보고를 접수하게 되면 행정처분인 시정명령에 관해서는 사전 통지 절차를 밟게 되는 것이지요?

○ 이우혁 의안·정책관리팀장

- 예, 그렇습니다.

○ 류신환 위원

- 그래서 오늘 행정지도를 할 것인지, 시정명령을 할 것인지 정하는 것에 따라 향후 절차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 이우혁 의안·정책관리팀장

- 예, 그렇습니다.

○ 류신환 위원

- 물론 저희들이 오늘 보고를 접수한 후 사전 통지 절차를 거쳐 시정명령 전에 의결 단계에서 처분하는 내용을 다시 정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 이우혁 의안·정책관리팀장

- 예, 그렇습니다.

○ 류신환 위원

- 변경 가능성은 있지만 사전 통지 절차를 밟느냐에 차이가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사전 통지 절차를 밟을지에 관한 결정이기 때문에 의결에 준하여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 김종철 위원장

- 저희가 미처 예상하지 못한 의안 결정 관련 사항이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안과 관련해서 저희가 정회하고 숙의한 후 다시 회의를 속개해서 결정하는 것이 현명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고 20분 정도 논의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최수영 위원

- 10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 이상근 위원

- 10분만 하시지요.

○ 류신환 위원

- 10분 하고 혹시 늦어지면 15분.

○ 김종철 위원장

- 그래도 여유 있게 20분 정도 정회하고 1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하겠습니다.

【11시 40분 정회】

【12시 05분 속개】

○ 김종철 위원장

-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고안건 가> 논의 중에 정회를 했고 속개를 하겠습니다. 그동안 저희의 결정사항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안건 중에서 권고사항 미이행에 관한 부분들은 원안대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다음 재승인 조건 미이행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 하나씩 다시 한번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TV조선 세부사항 미이행 건에 대해서는 처리를 행정지도로 하는 것으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MBN 세부사항 미이행 건에 대해서는 오늘 접수하지 않고 유보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접수 대상에서 제외해서 더 숙고해서 차후 보고를 받고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런 정리 사항에 대해 혹시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 류신환 위원

- 없습니다.

○ 김종철 위원장

- 나중에 다시 한번 이에 대해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협찬고지 사안과 관련해서 JTBC가 계엄 관련 뉴스특보로 협찬고지 2건이 누락된 사안, 채널A에서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속보로 협찬고지 1건 누락된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판단과 관련해서 세부 사항 미이행으로 판단하되, 처리방안과 관련되어서는 미이행에 정상 참작의 여지가 있으므로 시정명령이나 행정지도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원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최다액출자자로부터 독립적인 사외이사·감사 선임 건과 관련해서, 채널A의 경우 대표이사가 감사위원을 겸임하는 부분들과 사실판단에 있어서 세부사항 미이행으로 판단하고 처리방안과 관련해서 시정명령이 원안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토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최수영 위원

- 저는 점검결과 미이행으로 보고 시정명령이 사무처안에는 올라와 있습니다만 저는 조금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채널A는 감사위원회가 운영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감사 요건을 조건으로 부과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과연 적용하기가 정확하느냐는 애매한 지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채널A가 의견을 사업자에게 밝힌 바와 같이 상법상 감사와 감사위원회는 명백히 구별되므로 재승인의 감사 요건은 감사위원회 채널A 체제에 맞지 않는다는 의견도 있어서 저는 이 부분도 구별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또 구체적인 감사 용어 부분의 해석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원안에는 시정명령이 올라와 있습니다만 이 시정명령이 과하다는 것을 제 소수 의견으로 남기겠습니다.

○ 김종철 위원장

- 류신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류신환 위원

- 저는 시정명령에 동의하는 취지에서 간단하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방금 최수영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도 일리가 있습니다. 사업자 의견이기도 하고요. 다만, 이것이 사무처에서 이 조건에 대해 협의할 때 독립적인 감사를 선임하라는 이 조건을 부여했을 때 이미 채널A는 감사위원회 체제를 운영하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이 조건이 감사위원회의 감사위원들을 선임함에 있어서 독립성을 지키라는 조건으로 충분히 예측 가능했다고 인지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 해석상의 차이가 지금에 와서 “감사위원회를 이야기하는지 몰랐다. 우리는 감사는 없었기 때문에 우리 회사에는 해당 사항이 없는 것으로 알았다”는 이야기는 수긍하기 어렵지 않나 싶어서 시정명령에 동의합니다.

○ 김중철 위원장

- 다른 위원님들도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이상근 위원

- 아마 감사위원회 설립 취지가 감사보다는 조금 더 독립적인 권한이 부여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사보다는 조금 더 엄격하게 적용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원안을 지지합니다.

○ 김중철 위원장

- 윤성욱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윤성욱 위원

- 저도 원안에 동의합니다.

○ 고민수 위원

- 원안에 동의합니다.

○ 김중철 위원장

- 고민수 위원님께서 원안 동의하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 사안에 관해서는 다수의 위원님께서 원안대로 시정명령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최다액출자자 독립적인 사외이사·감사 선임 항목과 관련해서 채널A에 대해 시정명령하는 원안으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최수영 위원님만 의견을 주셨기에 저희 원안대로 의결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종합적으로 정리하면 재승인 조건 미이행 항목과 관련해서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 제고 관련 제출된 계획의 준수와 TV조선에 대해 행정지도하는 원안과 협찬 사실 고지와 관련해서 JTBC·채널A 등에 대해서는 미이행 사실이 확인됨에도 시정명령 및 행정지도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원안, 그다음에 최다액출자자로부터 독립적인 사외이사·감사 선임 항목에 있어서 채널A에 대해서 시정명령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위원회 다수의 의견이 모아져서 접수하도록 의견이 정리가 됩니다. 다만, MBN 세부사항 미이행과 관련해서 오늘 결정을 유보하고 향후 추가로 전체회의에 상정해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종합적으로 정리한 부분들에 대해서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원래 원안에서 MBN 관련 처리방안과 관련해서 오늘 접수 대상에서 제외하는 안으로 수정하여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2024년도 종합편성·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재승인조건 및 권고사항 이행실적 점검결과에 관한 사항 건과 관련해서 MBN 관련 건을 제외하고 접수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8. 기 타

○ 김중철 위원장

-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 처리는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준비하신 다른 논의사항 있으십니까?

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차기 회의는 사정에 따라 추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9. 폐 회

○ 김종철 위원장

- 오늘 방송미디어 분야 중요 안건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논의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제15차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2시 14분 폐회】